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4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1 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세무 및 법률정보

- 세정동향: 2022 년도 조세지 출 기본계획, 금융투자소득세 개괄
- 최신 세무예규·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1 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2.02.18]

2021 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I

배경

-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2.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를 **유도**

п

대 상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사, '21.12말 기준 잠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하 게	
	유가	코스닥	코넥스	П 60	합 계
2,477	823	1,523	131	449	2,926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





ш

주요 점검항목

- 1
- 재무사항(11개 항목)
- 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정보는 필수적인 정보이며, 합병·재작성 사실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회사별 작성 수준의 차이가 크고 부실기재 사례가 다수
- ∘ (점검내용)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②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②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 점검
- ②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5개 항목)
- · (선정사유) 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함으로써 감사품질 강화 및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
- -특히,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오기재** 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였음에도 **본문에 이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 점검을 통해 **충실 기재를 유도**
- ∘ (점검내용)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여부 및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등 점검
- ③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내역 적정성(2개 항목)
- ·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 (점검내용) ¹ 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및 ²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 점검
 - 2

비재무사항(7개 항목)

- ①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 · (선정사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 및 자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
- · (점검내용) ESG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 점검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 $^{\circ}$ (선정사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점검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③ 합병 등* 사후정보

- *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 (선정사유) 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주요 진행내용, 외부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
- (점검내용)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 점검

④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 ∘ (선정사유)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편제가 전반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개정서식 준수 여부 점검
- (점검내용) 사업의 내용 기재시 도입부에 요약정보 기재 여부, 계열회사 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에 대한 요약표* 활용 여부, 표 작성 의무화** 항목 등에 대한 기재여부 등 점검
- * 요약표는 본문에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Apendix) 항목으로 이동하여 기재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등

⑤ 임직원 현황 및 보수

- (선정사유) 임직원 현황 및 보수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인재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 (점검내용)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여부, 보수 5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에 대한 기재 충실성 등 점검
- * 보수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 등

⑥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선정사유)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안정 등 기대효과로 인해 투자의사 결정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
- (점검내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취득·처분 이행률 50% 미만시 미이행 사유 기재여부 등 점검

⑦ 특례상장기업 공시

- (선정사유)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정기보고서상 상장 후 실적, 관리종목 지정유예 요건 등에 대한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점검내용) 특례상장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 사항 예측치 및 실적 비교기재 여부, 직접금융 자금 중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 유예여부 등 기재점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u>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u>,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IV

향후 추진계획

-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2.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8개 항목)

Ι

재무공시사항(11개 항목)

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공시서식 §5-1-1)
2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공시서식 §5-5-1)
3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3)
4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2)



②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공시서식 §5-2-1)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공시서식 §5-2-1)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5	상장회사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③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및 검토의견 기재 여부(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공시서식 §5-3-1 등)

Ⅲ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순 번	항목명
1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공시서식 §5-7-2~3)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공시서식 §9-2-2)
3	합병 등 사후정보(공시서식 §11-4-8)
4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공시서식 §3-1-1, §3-2-1, §3-3-1, §4-2-1~2, §4-3-1~2, §7-3-1, §7-4-1~2, §11의2-2-1~4)
5	임직원 현황 및 보수(공시서식 §9-1-1~2, §9-2-1)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공시서식 §3-4-2)
7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5-7-3, §11-4-13)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출처: 금융감독원, 2022.03.28]

● 금융감독원은 12 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임박함에 따라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 2 중점 추진사항

모 회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추 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감리 프로세스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심사 · 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재무제표 심사 · 감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심사대상 산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회계법이 강리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중식의 강독 실시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의 정착 지원
 -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제재절차 합리화 · 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보호
 기술 ·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 ·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위함 여건

경제불확실성 등 분식회계 리스크 개선 요구 지산에 대한 시장의 요구 중대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①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②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
- ③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계열사간 부당거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계열사에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도 미기재
- (임원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뒤, 추후 회수된 금액은 전기오류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이익으로 계상
- (비정상적 자금사용) 실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내용과 무관한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출
- 나.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 ①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 및 효율성 제고
-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 도모
 -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실시
-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
-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
- ③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
- * '22년 중점심사대상('21.6.27. 사전예고)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❷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❸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❹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단위: 사, %) 103 120 '20년 대비 89 구 분 '19년 100 '20년 ′21년 79 증감 증감률(%) 49 60 표본 심사·감리 79 103 89 24 30.4 40 혐의 심사·감리 44 49 5 11.4 50 합 계 139 123 152 29 23.6 2019년 2020년 2021년

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①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 ∘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절차를 존중하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략한 경우 엄중 조치





- ②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 ③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①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 ·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②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 주석사항도 재무보고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표준화되면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심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 ③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 * (계도 위주 감리)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 (본격 감리) '22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 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21.7.12. 보도)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 년에 상장법인 등 180 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 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 인력 현황,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 *1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등록제 시행**('19년)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사** 선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구 분*	감리주기	해당 군별	′22년	<u></u> 실적			
TE 65	습니구기	회계법인 수	계획	′19	′20	′21	계
가군	2년	4	2	2	2	2	6
나군	3년	8	3	-	3	4	7
다군	3년	18	6	4	3	5	12
라군	3년	10	6	1	1	2	4
합계		40	17	7	9	13	29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별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 실시
- **('22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개) 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 (**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 (**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4 기대 효과

-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 \circ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 \circ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 및 $\mathbf{M}\mathbf{M}$ 수용성 $\mathbf{M}\mathbf{A}$
-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 ⇒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세정동향]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금융투자소득세 개괄

- □ 정부는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 □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 정책목표를 1)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재고, 2)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력 회복, 3)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6개 분야별 세부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O 선도형 경제전환
 -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지속
 - OTT콘텐츠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 검토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내국법인의 벤처출자 과세특례 등 심층평가 및 검토

O 탄소중립

수소경제 기반 구축 및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과 관련한 R&D 및 시설투자 지원 강화

-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지속 검토
-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지원 검토
- O 일자리 회복
 -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심증평가 및 검토
- O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심층평가 및 검토
- O 내수활성화
 - '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O 국민생활안전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검토
 - 월세세액공제를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심층평가 및 검토

금융투자소득세 개괄(소득세법)

- □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 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1'(이하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1)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 □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양도소득 등으로서 다음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	비고
주식 등의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장외거래주식,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법 시행일(2023.01.01.)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과점주주 주식 및 특정법인주식)은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채권 등의 양도소득	 채권의 이자상당액은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 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도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및 적격 ²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금 분배 ■ 국내 비적격집합투자기구 및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적격요건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금전으로 위탁 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금액

- O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및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를 차감한 금액
- O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 O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을 2022년말의 가격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O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을 다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적용
 - O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5,000만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O 기타의 소득금액: 250만원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과세표준 x 금융투자소득세율

- □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O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O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한울회계법인



2022년 4월호

3. 신고 및 납부

-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 O 금융투자회사는 원천징수기간(반기 또는 계좌해지일까지)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의 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계산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20%(지방소득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O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다음 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예정신고 대상소득	예정신고 기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양도로 간주)에 대한 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O 해당 과세시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³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3)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
- O 다만,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제외
 -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전-2022-법규소득-0337, 2022.03.30)

(사실관계)

- O 갑(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질의법인은 갑에 대하여 임원 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하였으나
 -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질의법인의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됨.
 - * 구제명령 내용: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 O 한편, 질의법인은 갑의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갑에게 근로기준법§26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

(질의내용)

○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회신)

O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소득-221, 2021.04.05.)을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합병사후관리 요건 중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02.22)

(사실관계)

- O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 하였음
- O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 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질의내용)

O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 부

(회신)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249, 2022.03.28)

(사실관계)

O 민원인은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2022년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예정이며, 수증자는 이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 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 에 해당하는 것이나,
- O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 O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재산세과-603, 2009.10.30.) 참고하기 바람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u>secretary@crowe.kr</u>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